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
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종규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6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일

3. 제정이유

- 재난의 대비 및 구호활동과 다양한 보건의료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 이산가족 재회, 지역봉사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4조)
-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단체·법인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
 - 둘째, 충청북도에서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셋째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등 제4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넷째, 적십자사 활동이 우수한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적십자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사료되며,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- ※ 참고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

붙임: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